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550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원이 · 박홍배 · 윤준병  
허성무 · 장철민 · 서삼석  
김한규 · 고민정 · 서미화  
조계원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이 공공구매(B2G)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서, 규모가 큰 민간소비시장(B2C) 및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시장 규모에 비해 정책 범위가 협소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정책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

최근 유통환경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인공지능(AI) 기반 추천·물류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형 플랫폼과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입점·노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유통채널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마케팅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정책의 수립,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기업 간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및 이행력 확보,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보칙, 벌칙 등 10개의 장(章)으로 구분함.

나.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넘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정의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2조)

- 1) 소기업 · 소상공인 · 대기업 · 구매기업의 정의를 신설함.
- 2)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 3) 마케팅을 유통망 구축, 홍보 · 판매 촉진, 사후관리 등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유통 · 판매관리 활동으로 정의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를 명시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마.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제시 근거를 신설하며, 마케팅 활동 및 공공구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통계작성을 의무화하고, 1년 중 1주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정하여 소비촉진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민간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1) 시장 조사,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함.
- 2)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함.
- 3)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공동상표 사용을 지원함.

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1) 전자상거래 플랫폼·텔레비전 홈쇼핑 입점 및 실시간 소통 판매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함.
- 2) 대규모점포 내 판매구역 입점, 체험형 매장 설치 및 오프라인 판

매전 개최를 지원함.

- 3) 공동 물류센터 조성,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등 물류 고도화와 판매 데이터 수집·분석 등 고객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함.

아. 기업 간 마케팅 지원 신설(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1) 기술 영업, 납품 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및 규격·인증 취득 등 기업 간 거래 역량 강화를 지원함.
- 2) 구매기업의 자발적 구매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장려함.
- 3) 구매상담회·기술설명회 등을 통한 구매기업 발굴 및 거래 기회 연결을 지원함.
- 4)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마케팅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안에 구매기업 수요와 중소기업 공급 정보의 자동 매칭, 거래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등을 위한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함.

자. 기술개발제품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 구매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 책임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구매 면책 제도를 신설함(안 제24조제8항).

차. 공공구매 참여기업이 민간시장 및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유통망 연계, 바이어 매칭, 인증·시험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카. 기존 판매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 지원센터를 공사로 이전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및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타. 성능인증 용어를 성능확인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및 제4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工事)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구매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고려하거나 구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  
원

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지원청

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  
애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8. “마케팅”이란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 촉진,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통·판매관리 활동을 말한다.
9. “물류고도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모성 자재”란 물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11.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시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혁신과 마케팅 역량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 및 구매촉진과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정책의 수립

### 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중소기업제품의 시장환경의 분석
3.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지원
4. 중소기업의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5. 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6.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 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1. 지원 사업의 기획·공고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협약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 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공공구매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의 내용, 범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소기업제품 마케팅활성화 지원) 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내수 진작 및 중소기업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보, 할인쿠폰 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제11조(중소기업자 등의 마케팅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판매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 조사, 소비자 성향 분석 및 수요 예측 등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2. 제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포장 개선
3. 브랜드의 개발·육성 및 관리
4.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지원
5.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6. 제품의 품질·안전 등에 관한 인증 취득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마케팅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지원

2.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전용 홍보관 운영 지원

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 상품 대응 지원

4.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5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온라인 및 방송채널 마케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지원

2. 텔레비전 홈쇼핑 등 방송 판매 채널 입점 및 판매 지원

3. 실시간 소통 판매 등 온라인 판매 지원

4.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및 운영

5. 정기 구독, 공동 구매 등 판매 방식 발굴

6. 그 밖에 온라인 및 방송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를 말한다) 및 텔레비전 홈쇼핑 사업자(「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오프라인 마케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 판매구역

## 입점

2. 국내외 전시회 · 박람회 참가 및 판매전 개최
3. 국내 체험형 매장 설치 및 운영
4.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
5. 그 밖에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물류 고도화 및 고객관리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유통 ·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물류센터의 조성 · 운영
2.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도입
3.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4. 원자재 · 부자재의 유통시설 조성·개선 등 물류고도화

5. 그 밖에 물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고객 관리 역량 강화 및 마케팅 전략 환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환·반품 처리 체계 구축
  2. 고객 상담 기반 조성 지원
  3. 판매 데이터의 수집·분석
  4. 그 밖에 고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기업 간 마케팅 지원

- 제17조(기업 간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 전략, 기술 영업 등 기업 간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간 마케팅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연수
  2. 납품 대상 기업의 발굴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시장 분석
  3. 납품 단가 산정, 계약 조건 협상 등 마케팅 실무에 관한 컨설팅
  4. 시제품 제작, 제품 설계·개량, 규격·인증 취득 등 기업 간 거래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기업 간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 사항

제18조(구매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상생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제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2. 그 밖에 구매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구매협약 체결을 장려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구매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납품대금의 조기 정산, 공정한 거래 조건의 보장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구매기업 발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구매기업 간 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기술설명회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제47조에 따른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에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마케팅통합정보망 및 기업 간 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통합정보망(이하 “마케팅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구매기업 간 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케팅정보망 내에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이하 “거래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거래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매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 정보를 연계하는 자동 매칭 기능
2. 기업별 인증 정보, 거래 이력 및 평가 내역의 관리·운영 기능
3. 시장·산업별 제품·기술 정보 및 거래 동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
4. 견적·입찰·납품 조건의 비교 및 거래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기능

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거래 플랫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민간 기업 간 거래 플랫폼과의 연계,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연계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마케팅정보망 및 제2항의 기업 간 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효율성 제고

제22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기업(제31조제1항의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자를 포함한다)과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공공기관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이하 “구매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실적의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한 경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⑧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하도급 중소기업자 등의 보호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수리·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익 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특별법에 이 법과의 관계

가 규정되어 있는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27조(공공구매정보망 구축 및 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2.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
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및 이행력 확보

제28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경쟁제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하는 경쟁 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라 한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납품한 제품의 품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4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2.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

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정 여부의 결정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품에 대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게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 및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동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4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3조제3항의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하도급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3.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범위, 신청 제한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소기업·소상공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37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

기업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조사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은 제27조,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8조(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공공구매 참여기업”이라 한다)의 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서비스의 기능, 규격, 디자인 등의 개선
2.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및 광고
3. 민간 유통망 연계 및 구매처 발굴을 위한 연계 및 거래 매칭
4. 민간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시험, 검증 등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정,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공구매 참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별 해외조달시장 및 민간시장에 대한 조사·분석과 유망 품목 발굴
2. 해외 진출 대상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진출 전략 및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
3.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시험, 규격 적합성 평가 등
4. 해외 바이어, 발주기관, 유통사와의 연계 및 수출·조달 거래 매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연계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 지원대상 기업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정, 지원 절차 및 방법, 관계 기관과의 협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7장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제40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및 시장 진출 지원
3.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제41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42조(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방법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중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3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등의 지원
2.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 ③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시범구매제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2. 시범구매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납품 요구사항,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인정범위, 가격 등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참여기업이 시범구매제품 선정 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범구매제품으로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

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와 지원금 지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품의 성능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확인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확인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성능확인의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성능확인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성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제품이 성능확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품의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확인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생산권한이 상실될 경우
4. 부도·폐업 등 성능확인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확인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확인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성능확인서의 분실·훼손 및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성능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46조(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업체로의 편중 해소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제2항의 지원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중소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입찰 참여자격 제한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제47조(설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등)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⑥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환경 및 마케팅 현황 조사·연구와 관련 기반 구축
4.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성과와 정책 환류 관련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보조·출연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47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3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자금조달)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52조의 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국고보조금
4.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56조의 공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6. 자산운용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5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이익준비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5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감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9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9장 보칙

제60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이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

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29조·제32조·제3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제25조에 따른 원사업자
3. 제33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
5. 제44조에 따라 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요구 및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청문)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제품 지정 취소
3. 제30조제3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5. 제42조제4항에 따른 시범구매제품 선정 취소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의 취소

제62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9조,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 제40조제2항, 제44조, 제

45조제3항 및 제4항, 제4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제47조에 따른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 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6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  
을 받은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제57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② 제44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